

건설 폐기물



한솔그룹

I. 건설폐기물의 정의

1. 건설폐기물의 정의 (법 제2조)

*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

(공사를 시작 할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)

건설공사가 아닌경우-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, 문화재수리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

단,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가능-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5의3

- 레미콘 · 콘크리트 ·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
-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페레미콘 · 페콘크리트 · 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(5톤이상)하는 페콘크리트, 페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건설폐토석

* 발생량 5톤 미만 : 생활폐기물(공사장생활폐기물)에 해당

-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시·군·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·운반·보관·처리할 수 있음(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5)

I. 건설폐기물의 정의

2.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 (시행규칙 제3조의 2관련)

분 류	분류번호	종 류	
가연성	40-02-06	폐목재(나무의 뿌리·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)	
	40-02-07	폐합성수지	
	40-02-08	폐섬유	
	40-02-09	폐벽지	
불연성	40-01-01	건설 폐재류	폐콘크리트
	40-01-02		폐아스팔트콘크리트
	40-01-03		폐벽돌
	40-01-04		폐블록
	40-01-05		폐기와
	40-04-13		건설폐토석
	40-03-10	건설오니	
	40-03-11	폐금속류	
	40-03-12	폐유리	
	40-04-10	폐타일 및 폐도자기	
가연성· 불연성 혼합	40-04-11	폐보드류	
	40-04-12	폐판넬	
	40-04-14	혼합건설폐기물	
기타	40-90-90	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(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)	

II. 건설폐기물 배출자 업무순서

1.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·수탁 계약체결 (법 제16조)

- ◎ 공사명, 상호, 소재지, 대표자, 운반장소(출발지 및 도착지),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
 - 폐기물의 종류, 위·수탁물량, 용역금액 등 기재
- ◎ 수집·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
 - 하나의 계약서로 체결,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
- ◎ 위·수탁계약서는 3년간 보관-미작성시 500만원 과태료부과

2.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(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9조), 건설폐기물 변경신고 대상

- ◎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-별첨 1, 수탁처리능력 확인서-별첨 2
- [**건설폐기물 변경신고 대상**] - 변경신고 시기 : 건설폐기물을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 까지
 - ◎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% 이상 증가
 - ◎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배출
 - ◎ 처리업체·처리방법,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
 - ◎ 미신고시-500만원, 변경신고 미신고시-100만원

II. 건설폐기물 배출자 업무순서

3. 건설폐기물의 인계·인수(법 제18조)

- ◎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
 - 건설폐기물을 배출,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
 - 작성방법 :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참조
- ◎ 간이인계서 작성 대상
 - 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건설폐기물
 - 작성방법 :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10조 참조

4.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(시행규칙27조)

- ◎ 실적보고 대상
 - 배출신고자
- ◎ 실적보고 내용
 - 배출자: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
- ◎ 미이행 시 처벌
 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(1차: 경고) 부과

III. 올바로 회원가입 - www.allbaro.or.kr

1. 올바로 시스템 접속하여 회원가입 완료.
2. 올바로 고객센터에 서류제출 : [팩스 0505-822-7820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]
 - ◎ 인허가서류 : 사업자등록증,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, 올바로시스템담당자 소속 및 재직확인서, 개인정보의 정보수집.제공.이용 동의서---(별첨 참조)
 - ◎ 그룹으로 승인된 경우 :
 - ▶ 그룹 아이디로 로그인 ▶ 인증서등 (타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사용 가능) ▶ 현장추가
 - ▶ 각 현장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 필증 정보에 따라 현장 추가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 ▶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팩스발송(아이디 기재) ▶ 승인
 - ▶ 인계서 작성
3. 올바로 전자인증서 설치(범용인증서, 금융결재원등)
 - ▶ 기초정보관리 ▶ 전자인증서관리 ▶ 인증서발급요청클릭

IV. 배출자 인계서 작성

◎ 예약등록

(폐기물 인계 시 정확한 위탁량을 알 수 없는 경우, 자체 계근시설이 없는 배출업체)

전자인계서관리 ▶ 배출자인계서 작성 ▶ 폐기물종류(성상)선택 ▶ 차량번호
선택 ▶ 저장

◎ 확정등록

전자인계서관리 ▶ 배출자인계서 작성 ▶ 폐기물종류(성상)선택 ▶ 위탁량입력
(확정여부자동표시) ▶ 차량번호 선택 ▶ 저장

◎ 배출자 인계서 수정

전자인계서 관리 ▶ 배출자 인계서 조회/수정 ▶ 폐기물 처리여부(폐기물 처리 전)
▶ 조회 ▶ 날짜 확인 ▶ 위탁량 입력 후 확정여부[예] ▶ 저장

IV. 배출자 인계서 작성 폐기물 인계 인수내용 입력방법 및 절차

배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운반자에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입력 ◎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내 확정입력
운반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◎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
처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◎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※ 처리량 및 처리일자는 폐기물처리후 2일 이내 임.단,처리기간 초과 불과
<p>※ 입력한 전자 인계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 24:00까지 수정할 수 있으며, 입력한 내용중 오류인계정보로 올바로 시스템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 3일내 오류인계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.</p>	

V.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작성

1. 올바른 시스템 접속

2. 그룹업체는 현장추가한 ID로 로그인

◎ 실적보고관리

▶ 건설폐기물 배출 및 실적보고 ▶ 공사명을 더블클릭하여 실적보고 상세현황 작성 ▶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 ▶ 저장 ▶ 제출

※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

폐기물 종류별 추가

발생량 입력

위탁처리란 업체 명 조회 처리량 입력

처리방법-파쇄분쇄(위탁)2106 입력